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151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6.01.08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직무대행 방침 제 1호

★과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직무대행
협 조	감사직무대행			

정관 중 개정정관(안)

- 이사회 서면결의 부의안 -

2016.

부 의 안

제 회 이 사 회			
일 자	2016. 1.	의안번호	제 호
의 제	정관중개정정관(안) 제 호		
구 분	의 결 사 항		

○ 제 안 자 : 기획조정실장

○ 주 문 : 정관중개정정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○ 제안사유

- ‘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 개정(’16.1.7시행)에 따른 공단의 수권자본금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코자 함.

○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○ 참고사항

1.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의회 가결(’15. 12. 21) 및 공포시행(’16. 1. 7)

2. 절 차 : 이사회 서면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
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중개정정관(안)

(제안요지)

1. 제안이유

가. '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' 개정('16.1.7시행)에 따른 공단의 수권자본금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단 수권자본금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(정관 제4조)

〈공단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〉

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재산을 전액 출자하여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, 영유아보육법령 준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납입자본금 출자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며, 이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공단 수권자본금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(조례 제4조 제1항)

나. 부칙신설 : 시행일 등(공단조례 개정시행일에 부합되게 2016.1.7부터 적용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의회 가결('15.12.21) 및 공포·시행('16.1.7)

나. 절차 : 이사회 서면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중개정정관(안)

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수권자본금) 제1항 중 “250억원”을 “300억원”으로 한다.

“부칙” 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4조(수권자본금)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,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출자한다. ② (생략)	제4조(수권자본금) ① ----- 300억원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	수권자본금 증액
부칙 (신설)	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.	조례 공포·시행일과 일치